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체계 마련 >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6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1. 제정안의 개관 ····· 4

2. 제정안의 입법필요성 ····· 5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정책 현황 ····· 5

나. 관련 사례 분석 ····· 9

다. 종합적 검토 ····· 14

3. 조문별 검토 ····· 22

가. 목적 및 정의 ····· 22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 25

다. 주민참여 ····· 27

라. 폐지지역 지원 방안 ····· 30

마. 지원기금의 설치 등 ····· 33

바.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 39

사. 조세감면 ····· 41

※ 참고자료 ····· 43

1. 석탄화력발전 부문 고용 구조 및 특징 ····· 43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충남 4개 시·군 설문조사 ····· 44

3. 유럽 주요국 탈석탄 계획 ····· 45

4. 독일 탈석탄위원회 보고서 요약 ····· 47

5. 영국의 탈석탄 관련 지원 프로그램 ····· 48

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202361) 비용추계서 요약 ····· 49

7.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 ····· 51

Ⅰ. 제안경위

□ 발 의 자 : 장동혁의원 등 16인

□ 발의연월일 : 2024. 7. 29.

□ 회부연월일 : 2024. 7. 3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화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등이 경제적 기반을 잃고 지역 경제가 침체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안은 총 21개의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제정안의 조문 구성

조항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진흥사업
제7조	주민참여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환경영향조사
제10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12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3조	지원기금의 설치
제14조	기금의 용도

조항	조 제목
제1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6조	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1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18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19조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20조	조세감면
제21조	권한의 위임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 현황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1)]를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지난 '21년 10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음.

’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량 기준 전체 발전원 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에 34%(196TWh)로 정부는 ’30년까지 그 비중을 19.7%(122.5TWh)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노후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임.

[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TWh, %)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무탄소	기타	합계
제9차 전기본	발전량	146.4	175.1	136.6	121.7	-	6.0	585.8
	비중	25.0	29.9	23.3	20.8	-	1.0	100
NDC 상향안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
제10차 전기본	발전량	201.7	122.5	142.2	134.1	13.0	8.1	621.8
	비중	32.4	19.7	22.9	21.6	2.1	1.3	100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4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0기로 그중에 10기가 30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인 29기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일부는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임.

[표] 화력발전소 현황 및 폐지 일정 (제10차 전기본 기준)

연번	지역	발전소명*	용량 (MW)	연번	지역	발전소명	용량 (MW)
1	전남	여수#1	340	31	충남	보령#3	550
2	2기	여수#2	329	32	29기	보령#4	500
3	강원	북평#1	595	33		보령#5('26)	500
4	8기	북평#2	595	34		보령#6('26)	500
5		삼척그린파워#1	1,024	35		보령#7	500
6		삼척그린파워#2	1,024	36		보령#8	500
7		동해#1('29)	200	37		신보령#1	1,019
8		동해#2('29)	200	38		신보령#2	1,019
9		강릉안인#1	1,040	39		당진#1('29)	500
10		강릉안인#2	1,040	40		당진#2('29)	500
11	경남	고성#1	1,040	41		당진#3('30)	500
12	14기	고성#2	1,040	42		당진#4('30)	500
13		삼천포#3('26)	560	43		당진#5('36)	500
14		삼천포#4('26)	560	44		당진#6('36)	500
15		삼천포#5('27)	500	45		당진#7	500
16		삼천포#6('28)	500	46		당진#8	500
17		하동#1('26)	500	47		당진#9	1,020
18		하동#2('27)	500	48		당진#10	1,020
19		하동#3('27)	500	49		신서천#1	1,018
20		하동#4('28)	500	50		태안#1('25)	500
21		하동#5('31)	500	51		태안#2('25)	500
22		하동#6('31)	500	52		태안#3('28)	500
23		하동#7	500	53		태안#4('29)	500
24		하동#8	500	54		태안#5('32)	500
25	인천	영흥#1('34)	800	55		태안#6('32)	500
26	6기	영흥#2('34)	800	56		태안#7	500
27		영흥#3	870	57		태안#8	500
28		영흥#4	870	58		태안#9	1,050
29		영흥#5	870	59		태안#10	1,050
30		영흥#6	870				

* 음영 표시한 발전소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괄호 안의 연도는 폐지 예정 연도임.

자료 :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석탄화력발전과 관련된 산업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20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발전공기업, 협력사, 발전공기업 자회사 등을 모두 고려한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고용인원은 22,0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발전설비 운전, 연료 수송, 시설관리 등[2]과 관련된 일자리가 대규모로 감소[3]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에 거주하면서 판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을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 효과[4]는 커질 것으로 보임.

특히,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군(태안, 당진, 보령, 서천) 지역주민과 근로자는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을 지역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발전소 폐지 이전에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5].

---

2)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고용 구조 및 업무 특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3)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인력 중 **5개 발전공기업의 근로자**는 지금도 순환근무 등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직무전환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고용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발전공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는 일자리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년에 실시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전국의 취업유발감소 인원**은 **주변 상권 근로자 및 발전소 연관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약 2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나. 관련 사례 분석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미 탈석탄 정책을 시행 중이며,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탈석탄 정책을 시행[6]하면서, 화석에너지산업 축소의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정안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인 독일과 영국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거버넌스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먼저, **독일**은 발전용 석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7]와 달리 자국 내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을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석탄을 생산하는 광산 인근 지역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큰 상황임.

---

5) **충청남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참고자료 2]** 참조
6) **유럽 주요국의 탈석탄 계획** 현황은 **[참고자료 3]** 참조
7) 우리나라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으로 연탄을 제조하기에는 적합하나, 발전용 연료로는 부적합하여 **대부분의 발전용 석탄은 외국에서 수입** 중임.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18년 6월에 탄광지역 대표 및 에너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8]한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Kommission für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이하 "탈석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원들이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한 후에 그 내용[9]을 입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탈석탄법(Kohleausstiegsgesetz)」, 「석탄지역 구조강화법(Strukturstärkungsgesetz)」 3개의 법률이 제정되었음.

법률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연방기후보호법」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한 중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② 「탈석탄법」은 탈석탄 목표와 함께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단계적인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③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탈석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①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10], ②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천연가스 또는 재생에너지원

8) 구체적인 위원회 인원은 연방의회 3명, 연방정부 1명, 탄광지역 대표 7명, 산업계 5명, 에너지 산업계 대표 4명, 환경단체 3명, 노동조합 대표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었음.
9) 독일 탈석탄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참고자료 4]** 참조
10) 무연탄화력발전소는 2027년까지 경매를 통해 폐지하고 이후에는 강제로 폐지하되 빨리 폐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구조이고, 갈탄화력발전소는 연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

사용 열병합발전소로의 전환 보너스 지급, ③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금 지급[11], ④ 인프라 건설, 기업·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탄광지역 재정지원 기금 조성[12] 등임.

(2) 반면, **영국**은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기반으로 18세기 유럽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지만, 탈석탄 정책과 별개로 이미 석탄 채굴이 경제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가 탄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영국이 2013년에 도입한 전력시장개혁(Electricity Market Reform, EMR)은 영국의 석탄발전 감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EMR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① 차액정산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13], ② 용량시장제도(Capacity Market, CM)[14], ③ 탄소포집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신규 화석연료발전소 탄소배출량 제한(Emission Performance Standard, EPS)[15], ④ 탄소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탄소가격하한 제도(Carbon Price F

한 폐지를 진행 중임.

11) 고용전환 지원금은 2038년까지 예정된 탈석탄 정책의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최대 40,0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됨.

12) 「석탄지역 투자법(Investitionsgesetz Kohleregionen, InvKG) 」 및 여러 교통노선법(Verkehrswegegesetze)를 제·개정하였음.

13)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원 투자자는 당초 계약한 가격에 비해 전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력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계약가격(strike price)으로 정산**받는 것이 보장됨.

14) **신규설비투자를 유인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비예비력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나, 기존 화력발전소가 용량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져 탈석탄 정책에는 기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15) **설비용량 50MW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발전소에 대한 EPS의 제한 기준은 450kg/MWh**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탄소포집시설(CCS)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

loor, CPF)[16]로 구분됨.

[그림] 영국 전원별 발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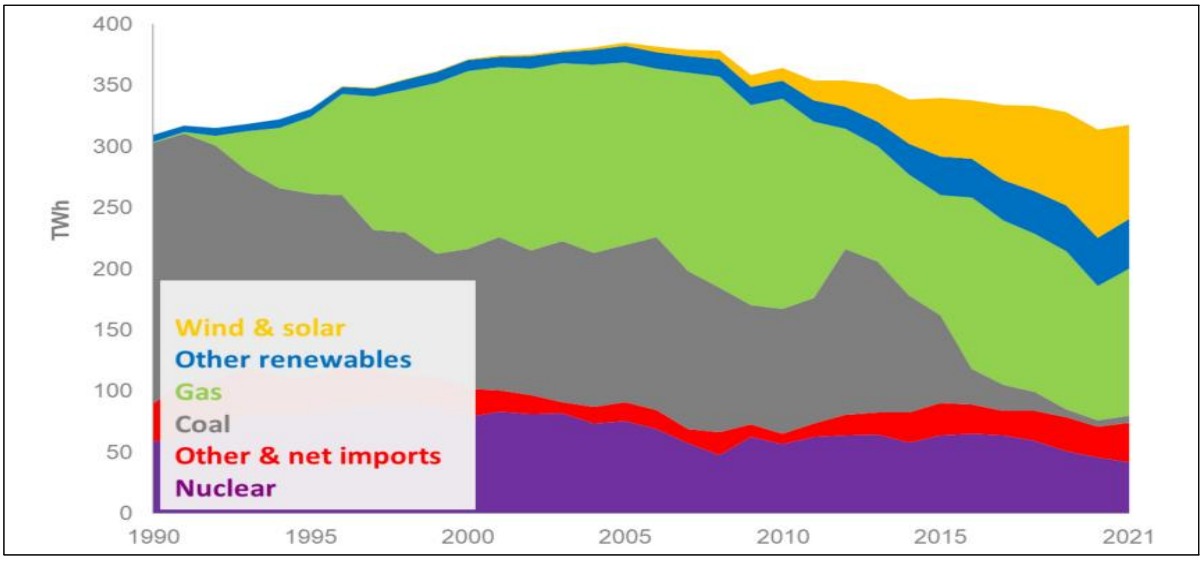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처럼 영국에서는 시장경제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반영된 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소 감축이 이루어졌으므로, 독일과 같이 정부가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로 진행[17]되었음.

(3) 탈석탄에 적극적인 독일과 영국 두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인 제도들을 활용하면서 전력시장을 개혁한 영국의 사례보다는 입법을 통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음.

16) 기존 탄소배출권 가격에 **일정 수준의 탄소가격부담금**(Carbon Price Support, CPS)을 **추가하여 탄소가격의 하한**을 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발전소는 입찰 경쟁력이 약화**되어 영국 발전시장에서 서서히 퇴출되었음.

17) 영국이 시행한 탈석탄 관련 개별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5]** 참조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독일은 입법과정에 앞서 탈석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탈석탄 정책 및 정의로운 전환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임.

다만, 입법을 통하여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영국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차액정산계약, 탄소가격부담금 등)를 활용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한 것처럼 이와 유사하게 입법을 통한 탈석탄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한 폐광지역 경제 쇠퇴 및 지역기업 경영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을 1995년 12월에 제정하였는데, 이는 동 제정안과 일부 유사성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폐특법을 통해 진행한 주요 사업은 6개로, ①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②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③ 탄광지역개발사업, ④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 ⑤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 ⑥ 투자법인 설립이며, 최근까지도 진행 중인 사업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18]와 폐광지역개발기금[19] 조성임.

폐특법이 제정된 후 27년간 폐광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평가[20]를 받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폐광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려 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할 때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적 검토

해외 사례들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기반을 잃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

18)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기업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19)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의 25%를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기금
20)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르면 폐광기금 중 대체산업 육성사업 비중은 전체의 25.8%에 불과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한 가시적인 폐광지역진흥 성과 창출에 있어 다소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원방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먼저,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7장 ‘정의로운 전환[21]’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지역이나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제47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제48조), 녹색산업 업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제49조),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제52조) 및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제53조)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10장에서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지역에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폐지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정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서해안 지역 등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 상권 침체 등의 문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후대응 기금의 용도도 정의로운 전환 외에 다른 사업이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충분한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탄소중립기본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라 한다)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2]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가동 중지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큰 충남 서해안 인근 지역 등도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을 통한 지원은 재난 등으로 인한 생산시설 피해, 특정 업종의 불황, 생산기지의 이전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23]인데,

---

2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3) 참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경우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가 지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산업위기대응법과 취지와 목적이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응되는 연방기후보호법과 별개로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지역 경제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24]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는 지역이나 부담을 지게 되는 산업체 등에 대하여 탄소중립 기본법 또는 지역위기산업대응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국내·외 유사사례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①

되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울산 동구, 거제, 군산, 목포 등이 지정되었음.

24) 다만, 독일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미 1980~1990년대에 석탄 광산을 폐광하고 폐특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와는 상황에 차이가 있음.

고용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감면과 같이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폐지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절차, 부지와 계통설비 등 잔존 인프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억 7,000만원, 연평균 5,400만원으로 추정됨.[25]

25)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6] 참조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제정안은 법률의 목적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체계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안 제1조),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등의 뜻과 범위를 제시함(안 제2조).

[표] 목적 및 정의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 중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화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

제 정 안
였던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6. “대체산업사업자”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조성・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의 취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발전소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이르는 공정과 연료 관련 산업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한 입법례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26]에서 원자력발전산업의 정의를 제정안과 같이 ①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②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③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근무자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뿐만 아니라

2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는 제정안을 통해 직접 지원을 받을 대상이므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추진 과정에 따라 범위가 변동될 여지도 있어, 근로자의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제 정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 및 산업에 대한 피해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근로자 현황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조사 3. 제6조에 따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종합적인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향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의 항목 내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 정 안
정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발전소 가동 기간에 따라 중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기침체는 지역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발전소 폐지 계획에 부합하는 중장기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같이 수립하게 하여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주민참여

제정안은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표] 주민참여

제 정 안
제7조(주민참여)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하여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이 목적이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선례를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대체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이 2022년 1월에 개정[27]되면서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제52조) 및 온라인 정책토론(제53조)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는데, 제정안에서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명시적

27)법률 제18747호, 2022.1.11. 일부개정

으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의견수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표]「행정절차법」 국민참여 규정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예산·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홍보, 포상, 예산·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51조[28]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주민참여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폐지지역 지원 방안

제정안은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대체산업사업자의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등 우선 고용(안 제10조제1항), 대체산업사업자의 폐지지역 및 주변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10조제2항), 대체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 자금 지원(안 제11조), 대체산업사업자 공사 등 계약 체결 시 지역기업 우대(안 제12조) 등의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표] 폐지지역 지원 방안

제 정 안
제10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시·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대체산업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1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대상은 일자리를 잃게 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므로,

대체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정책의 혜택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거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 등이 실질적으로 동 제정안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향유하도록, 제정안과 같이 대체산업사업자가 지역주민등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안 제12조에 따라 대체산업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지역기업의 범위를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법률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우대한다는 것은 입찰 등에 참여한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는 것으로, 우대 대상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다수 업체가 우대조치를 받아 우대정책을 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이 시행되고 시행령으로 지역기업 우대조치를 구체화할 때,

해당 규정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되도록 대상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로 한정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인접 기초지자체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5[29]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계약 체결 우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마. 지원기금의 설치 등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3조), 기금이 사용될 용도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표] 지원기금의 설치 등

제 정 안
제13조(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2.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3.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4.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제 정 안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30]에 따라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으로, 정부의 출연금이나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함.

기금의 재원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융자금, 개인·단체의 임의·강제 출연금, 부담금, 기금의 차입금,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출연금·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데,

3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4조[31]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목적사업과 연계성이 있고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을 신설할 때 정부의 출연금 외에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대응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또한,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은 ① 정부의 출연금, ②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

31)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금, ④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만으로 재원이 구성되므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재원을 구성에 추가하고 정부의 출연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의 재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제2호[32]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이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받는 지역 및 노동자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 11. (생 략)

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23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33]을 살펴보면, 전체 약 2조 5천억원 규모의 기금 중 대부분은 기존 사업에 투입되었고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기금은 약 8백억원(3.2%)에 불과하였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 예산도 총 2천억원(8.2%) 수준으로 현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기후대응기금만으로 폐지지역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33)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7]** 참조

바.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의에 따라 폐지지역이 아닌 곳에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표]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 정 안
제19조(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아닌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혁신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됨.

따라서, 안 제19조제1항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된다면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대체산업사업자들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

자리 창출을 위한 대체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9조제2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아닌 곳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도 위임하지 않고 있음.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자유특구 우선 지정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으로 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그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 조세감면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표] 조세감면

제 정 안
제20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개발촉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로만 가능하고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개발촉진과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세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의 개정으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감면 등 세제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다[34]는 입장임.

34) **법제처 법령안심사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의 감면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자칫 납세자가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자료 1] 석탄화력발전 부문 고용 구조 및 특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기업
분류</th><th>인원
(명)</th><th>특징</th></tr>
<tr><td>원
청
사</td><td>발전
운영</td><td>발전
공기업</td><td>12,090</td><td>○ 발전사 정규직은 발전기· 터빈· 보일러 같은 메인설비의 운전 및 협력업체와 자회사 담당 업무의 관리감독도 맡고 있음
- 순환근무로 인해 근무지역 변경 가능</td></tr>
<tr><td rowspan="2">협
력
사</td><td>연료
환경</td><td>민간
기업</td><td>2,283</td><td rowspan="2">○ 한전KPS나 한전산업개발은 규모가 크고 전국에 사업장이 있으며, 특허와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이 높음. 그러나 지역기반의 업체들은 영세함
- 발전사와의 계획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 연료환경부문은 LNG로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높으나, 경상정비 부문은 LNG발전소에도 유사기술이 활용되므로 일자리 상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 단, 영세업체 및 2차 협력사는 지역 고착성으로 일자리 위기 가능성 높음</td></tr>
<tr><td>경상
정비</td><td>공기업
(45%)
민간
기업
(55%)</td><td>5,310</td></tr>
<tr><td>자
회
사</td><td>청소
경비</td><td>발전
공기업
자회사</td><td>2,623</td><td>○ 자회사 근로자는 청소, 시설관리, 경비, 소방방재, 홍보관 운영 업무 담당으로 특성상 고용불안정은 협력업체에 비해 낮은 편임.
- 단, 일부 호기가 폐쇄되어도 경비, 소방·방재업무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으나 청소업무는 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업무에 따라 영향이 상이함
- 청소업무 담당자는 지역고착성 높은 중년 이상 여성이 대부분이어서 타지역 전환배치 불가</td></tr>
<tr><td colspan="3">합계</td><td>22,306</td><td></td></tr>
</tabl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충남 4개 시·군* 설문조사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될 때 나타날 가장 큰 문제점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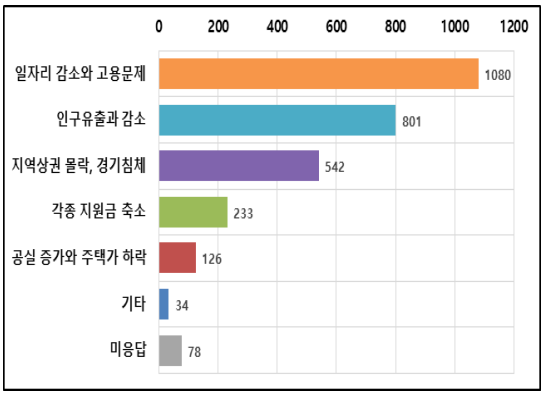

응 답	응답수	
합 계	2,894	100%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	1,080	37.3%
인구 유출과 감소	801	27.7%
지역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	542	18.7%
각종 지원금 축소	233	8.1%
공실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	4.4%
기타	34	1.2%
미응답	78	2.7%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필요한 지원(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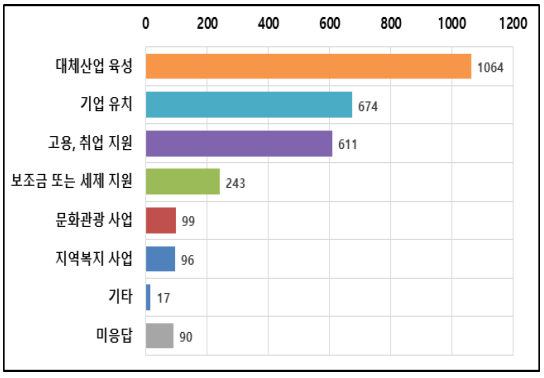

응 답	응답수	
합 계	2,894	100%
대체산업 육성	1,064	36.8%
기업 유치	674	23.3%
고용, 취업 지원	611	21.1%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	8.4%
문화관광 사업	99	3.4%
지역복지 사업	96	3.3%
기타	17	0.6%
미응답	90	3.1%

* 태안, 당진, 보령, 서천
자료: 충청남도

[참고자료 3] 유럽 주요국 탈석탄 계획

국가	연도	내용
그리스	2019년	2028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5년까지 탈석탄
	2022년	탈석탄 계획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
네덜란드	2017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9년 이에 대한 법제화
덴마크	2017년	PPCA(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8년까지 탈석탄
독일	2019년	독일탈석탄위원회 2038년까지 탈석탄 계획 권고, 2020년 이에 대한 법제화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루마니아	2021년	2032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2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30년까지 탈석탄
몬테네그로	2021년	2035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벨기에	2016년	유럽 내 최초로 석탄을 사용한 국가에서 탈석탄 국가로 전환
북마케도니아	2021년	2027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불가리아	2021년	2038-4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스웨덴	2017년	2022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0년	유럽 내 세 번째 탈석탄 국가로 전환
스페인	2021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슬로바키아	2019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슬로베니아	2022년	203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아일랜드	2018년	PPCA 가입, 2025년까지 탈석탄 계획
영국	2015년	2025년까지 탈석탄 최초 선언
	2020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4년까지 탈석탄 계획
오스트리아	2016년	202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9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0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0년	유럽 내 두 번째 탈석탄 국가로 전환
	2022년	2020년 탈석탄 국가로 전환되었으나, 2022년 6월 석탄 1기 예비전력으로 배치, 2023년까지 탈석탄 계획
이탈리아	2017년	2025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체코	2022년	203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크로아티아	2021년	2033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포르투갈	2017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9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3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0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1년까지 탈석탄 계획
	2021년	유럽 내 네 번째 탈석탄 국가로 전환

폴란드	2021년	COP26에서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서명
프랑스	2016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17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2년까지 탈석탄 계획, 2019년 이에 대한 에너지 및 기후법 제정
	2022년	탈석탄 계획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
핀란드	2016년	2030년까지 에너지생산을 위한 석탄 사용 금지 발표, 2019년 이에 대한 법제화
헝가리	2019년	2030년까지 탈석탄 계획 발표
	2021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5년까지 탈석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자료 4] 독일 탈석탄위원회 보고서 요약

○ 독일은 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Kommission für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이하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 1월, 탈석탄위원회는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함.

○ 탈석탄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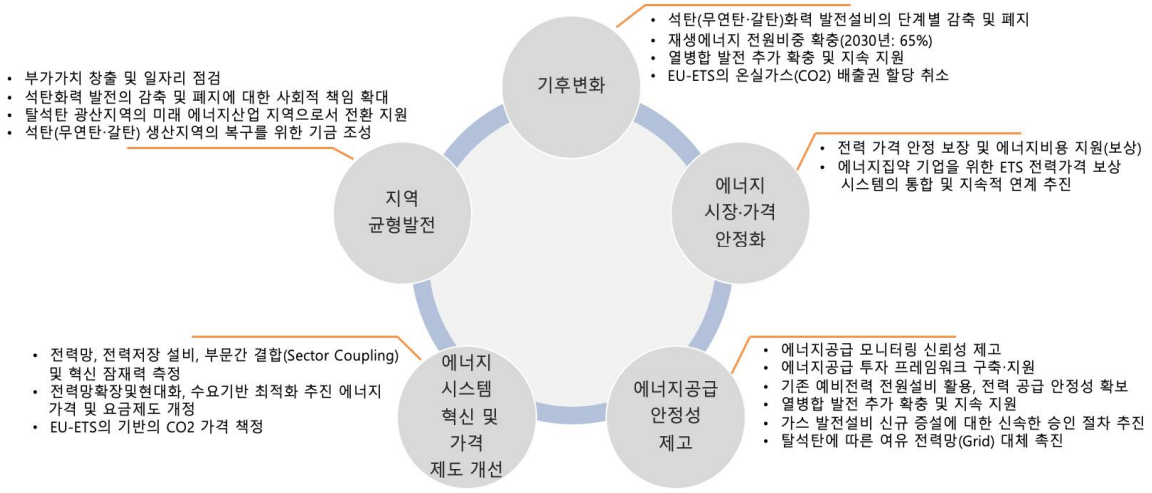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자료 5] 영국의 탈석탄 관련 지원 프로그램

대상	분야	정책
소비자 /가정	보상	•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선택한 녹색 요금을 보상한 후 면제 진행
	구조조정 지원	• 가정 및 상업용 건물 태양 전지판 설치 보조금 지급
	적응 지원	•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자문 제공
노동자	보상	• 6~12개월 임금 수준의 퇴직 일시금 지급 • 주 정부 실업 수당 및 장애수당 제공 • 기타 복지 혜택 제공
	구조조정 지원	• 퇴직 후 6~12개월 동안 채용 및 직업훈련 자문 제공
	적응 지원	• 석탄산업 사회복지 단체(Coal Industry Social Welfare Organization)에 대한 정부 자급 지원
기업	보상	• 영국 재무부 재정적 손실 흡수 • EU 법규에 따라 민간 석탄 생산업체에 보조금 제공 • 영국 재무부가 광부의 건강 보상 및 환경 관련 책임 흡수
	구조조정 지원	• 시장경제로 인한 기업 다각화(석탄발전소→가스, 광산 회사→부동산 개발회사) 모색
	적응 지원	• 세금 및 규제 완화
지역사회	보상	• 수익지원보조금제도(Revenue Support Grant System) 마련하여 광산 및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산세 세입 손실 보상
	구조조정 지원	• 정부가 지원하는 탄광부지 매립 프로그램 마련 • EU 구조 기금(Structural Funds) 지원 • 영국 지역정책 일환으로 석탄 채굴지역에 대한 실업 대책지원지역 (Assisted Area) 지위 획득 • 폐광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적응 지원	• 석탄지역(Coalfields)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 재생신탁(Regeneration Trust) 마련 • 유산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복권 기금 마련 • 국립광산박물관 기금 제공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자료 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61) 비용추계서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조문별 추계여부 현황]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
안 제6조(진흥사업)	×	○ 안 제6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안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2항은 진흥사업의 추진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7조(주민참여)	×	○ 안 제7조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2항은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9조(환경영향조사)	×	○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제3항은 환경영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조사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11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	○ 안 제11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1조는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13조(지원기금의 설치)	×	○ 안 제13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사용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14조(기금의 용도)		
안 제1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 안 제17조는 진흥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보조율 인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20조(조세감면)	×	○ 안 제2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개발 촉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Ⅱ. 비용추계 결과(일부추계)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간 총 2억 7,000만원, 연평균 5,400만원 이상

○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	270	-	-	270	54

[참고자료 7]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현황		계획*			총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현황	총액		2,046,509	2,486,723	2,532,797	2,549,687	2,561,632	12,177,348
	온실가스 감축		855,203	986,624	981,914	1,008,914	1,025,414	4,858,069
	저탄소 생태계조성		438,679	636,422	646,492	656,492	666,492	3,044,577
	공정한 전환		147,836	203,781	223,781	223,781	243,781	1,042,960
	탄소중립 기반구축		574,653	627,591	594,993	564,405	526,945	2,888,587
	환경행정 지원		2,314	2,698	2,756	2,815	2,877	13,460
	예수이자 상환		5,156	17,418	19,897	30,791	41,695	114,957
	여유자금 운용		22,668	12,189	62,964	62,489	54,428	214,738
사업현황	총계	수	143	156	161	173	184	
		금액	2,046,509	2,486,723	2,532,797	2,549,687	2,561,632	12,177,348
	신규**	수	72	17	20	36	49	
		금액	624,904	80,500	93,337	170,000	230,000	1,198,741
	계속	수	71	139	141	137	135	
		금액	1,421,605	2,406,223	2,439,460	2,379,687	2,331,632	10,978,607

* '22~'26 중기계획상 규모
** 중기계획상 신규사업 수, 금액은 추정치
자료 : 기획재정부